

▣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 러시아·몽골·터키 경쟁당국 대표와 연쇄회동

경쟁법 관련 협력강화방안·한국기업의 애로해소 방안 등 논의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이 9월 4일 러시아·몽골·터키 3개국 경쟁당국 수장들의 예방을 받고 양국 간 경쟁법 집행에 관한 협력강화방안과 우리 기업 진출 시 애로해소 방안 등을 논의했다.

각 경쟁당국 대표는 9월 3일 거행된 서울경쟁포럼 참석차 한국을 방문했다.

안드레이 치가노프(Andrey Tsyganov) 러시아 반독점청(Federal Anti-Monopoly Service) 부의장과는 50분간 환담을 통해 최근 자국의 경쟁

법·정책 집행 동향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면서, 양국 간 정기적인 양자협의회 개최, 국제카르텔 등 법위반에 대한 정보교환 등 협력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칼드림치(Kaldirimci) 터키 경쟁당국 위원장과는 지난 2005년 체결된 양국 간 협력 MOU를 토대로 정기적인 양자 협의회 개최, 공동 세미나 등을 통한 정보교환 등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알탄후야그(Altanhuyag) 몽골 불공정거래규제처 부위원장과는 최근 한국-몽골간 경제교류가 확대되고 있는 점에 공감하면서, 한국 진출기업이 경쟁법 집행으로 인해 겪을 수 있는 애로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 올해 양자협의회 개최를 통해 협력강화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한국의 경쟁법 집행에 관한 노하우를 적극적으로 전수해 주기로 합의했다.

한편, 공정위는 9월 3일 서울경쟁포럼 이후 진행된 만찬에 20여 명의 국내 기업인들을 초대하여 세계 26개국 경쟁 당국 고위 당국자와 직접 교류의 장을 마련한 바 있다.

국내 기업인들이 서울경쟁포럼과 같은 행사에 참여해 해외 경쟁당국자들과의 교류를 통해 글로벌 경제의 스탠더드 가 되고 있는 공정한 경쟁질서 문화를 이해함으로써 비즈니스 위험성을 줄여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중소기업에 대한 CP 도입요건 완화

기업의 자율준수를 통한 시장경쟁질서 확보에 기여

공정거래위원회는 8월 27일, 중소기업이 적은 비용으로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이하 “CP”)을 도입·운영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CP 도입요건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현행 중소기업 대상의 CP 도입요건 중 ‘교육프로그램 실시’를 권장사항으로 변경한다는 것

이를 한국공정경쟁연합회(회장 한영섭)를 통해 업종별 자율준수표준편람을 작성해 중소기업에 보급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중소기업의 연간 CP 도입 및 운영 경비의 약 65% 정도 경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CP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기업이 스스로 준수하기 위해 운영하는 준법시스템으로 ‘기업 내 작은 공정위’라고도 불리며 업종별, 기업별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운영될 수 있다.

그러나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해서는 ① 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 의지 선언 ② 자율준수관리자의 임명 ③ 자율준수 편람의 제작·배포 ④ 교육프로그램 실시(반기당 2시간 이상) ⑤ 내부감독체계의 구축 ⑥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임직원에 대한 제재 ⑦ 문서관리체계의 구축 등 7가지 핵심요소가 요구된다.

특히, 법위반행위에 대한 정부의 사후적 공적집행만으로는 시장경쟁질서 확보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업 스스로의 자율준수 문화 확산을 통한 법위반의 사전예방이 중요함에 따라 CP 도입 및 운영의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현재까지 CP 도입 313개사 중 대기업은 233개(74.4%), 중소기업은 80개(25.6%) 등 CP 도입이 주로 대기업을 중심으로 확산되어 왔다.

중소기업의 공정거래법 위반사례가 아직 많지 않지만 중소기업에도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 및 준법경영의 확산이 필요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CP 도입 요건 완화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지난 6월 실시한 중소기업에 대한 CP도입 수요 설문조사 결과, CP 도입 의사가 있는 중소기업이 일부(24%) 있으며, 특히 비용이 적게 드는 CP제도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번 CP 도입요건 완화 방안을 통해 CP도입 및 운영비용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교육프로그램과 자율준수 편람제작 부담을 경감시켜, 중소기업의 CP도입이 용이해짐으로써 중소기업에도 자율준수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2008년 2/4분기 다단계판매업자 주요정보 공개

상반기 중 다단계업체 8곳 문 닫고, 7개 업체가 이름 바꿔

공정거래위원회는 다단계판매 관련 소비자 정보제공 및 피해예방 시책의 일환으로 다단계판매업자의 2/4분기 중 주소 등 주요정보의 변경현황을 공개하고 있다.

2006년 3월 이후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소 등의 변경현황을 매년 분기별로 공개하고 있으며, 이번에는 2008년 2/4분기 중 주요 변경사항과 1/4분기 변경사항 누락분(시·도의 일부 사업자 변경 현황 미제출)을 공개하기로 했다.

공개되는 주요정보는 다단계판매업자의 상호변경, 주된 사업장의 주소·전화번호 변경, 휴업 또는 폐업신고 등의 사항이며, 2008년 3월 31일 현재 기준 71개 사업자 중 2/4분기 기간 변경이 발생한 사업자는 14개, 변경 건수는 16건이며, 1/4분기 누락 사업자는 6개, 변경 건수는 8건이었다.

다단계판매업자 주요정보는 공정위 소비자홈페이지 www.consumer.go.kr의 '다단계판매업자의 상호·주소 등 변경 공고' 사이트를 통해 공개되며, 누구나 해당 사업자의 변경 세부현황을 열람할 수 있다.

□ 대형광고대행사인 대홍기획에 첫 과징금 부과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따른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천만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8월 22일 용역을 완료한 하도급 업체에게 서면계약서를 교부한 (주)대홍기획의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천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홍기획은 2006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주)머큐리포스트 등 17개 수급사업자에게 광고제작 관련 용역을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및 지급방법 등이 기재된 서면을 용역을 완료한 후에 교부했다는 것. 또, 2005년 10월 13일부터 2006년 11월 30일까지 (주)엘비스프리డ션 등 5개 수급사업자에게 '우리은행의 TV-CM제작'을 위탁해 납품받은 후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면서 '완성된 광고제작물이 TV에 방영되지 못할 경우 정상가격의 50%를 적용하는 것이 업계 관행'이라는 부당한 방법을 이용해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이에 공정위는 대홍기획이 머큐리포스트 등 17개 수급사업자에게 용역을 위탁함에 있어서 서면지연교부행위에 대해 부당한 하도급대금경정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천만원을 부과키로 의결했다.

이번 시정조치는 공정위가 광고대행사에 과징금을 부과한 최초의 사례로, 용역 하도급거래시장에서 영향력이 큰 광고대행사에 대해 '업계 관행'이라는 부당한 방법을 이용해 광고제작비 부담을 영세한 중소수급업체에게 전가하는 행위에 대해 제동을 걸게 됐다.

▣ 외주제작 드라마 신고사건 무혐의 결정

지상파 방송 3사,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워

공정거래위원회는 8월 21일 사단법인 한국드라마제작자협회 외 30개 드라마 외주제작사들의 신고 사건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드라마 외주제작사들은 지상파 방송 3사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드라마 창작의 기여도를 고려하지 않고 외주제작사가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을 포괄적으로 양도받고 있어,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남용에 해당된다 는 것과 지상파 방송 3사가 드라마에 대한 아시아 지역 판매금액의 수익 분배율이 방송사와 외주제작사간 6:4로 동일해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며 공정위에 신고한 바 있다.

이에 공정위는 신고 접수 후 외주드라마 저작권 귀속의 부당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지상파 방송 3사의 2004년부터 2007년간 외주드라마 계약서 154건에 대해 계약조건을 일일이 확인하고, 드라마들의 광고수익 및 저작권 관련 수익 현황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결과 무혐의의 결정을 내린 것이다.

공정위는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외주드라마 저작권을 포괄양수 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외주드라마 저작권의 귀속주체가 불분명하고 통상적 거래관행의 존재하지 않으며, 불이익 규모 산정이 곤란하고 저작권 귀속주체의 차이에 따른 대가에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무혐의의 결정을 내렸다.

또, 부당하게 아시아 지역에 대한 판매금액 분배율을 동일하게 결정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개별 드라마별로 대행수수료가 15% 또는 20%로 다양하게 존재하며, 아시아지역 판권 분배율이나 분배기간도 드라마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거론했다.

그리고 MBC가 가장 외주를 통해 외주제작사에게 협찬 등을 부당하게 강요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해 본 결과, 상기 거래는 외주제작사가 제안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동 계약의 체결과정에서 강제성이 없었다고 결론 내렸다.

공정위는 이번 신고사건에 대해 방송사와 드라마제작사 사이에서 오랫동안 논쟁이 되었던 저작권 귀속문제에 대해 공정거래법 차원에서 판단이 이루어진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신고사항이 공정거래법 적용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지만, 계약서 검토과정에서 외주제작사들을 어렵게 하는 일부 불공정한 조항을 확인하고 이를 자진 시정토록 하는 성과를 거뒀다는 것.

공정위는 향후 외주제작 시장의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문화부, 방통위 등 관련부처와 제도개선 방안을 함께 강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 도입

하도급법 개정안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8월 20일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 도입'을 골자로 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 원자재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자의 납품단가는 소폭 상승에 그쳐 중소기업인 수급사업자에게 큰 경영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납품단가 조정은 당사자간 자율적인 협의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시장경제원칙에 부합되지만, 전속거래관행 등 사실상 원사업자에 귀속된 수급사업자가 가격을 협의하기 어렵고 협상 기회조차 갖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이에 공정위는 하도급법에 납품단가 조정협의 신청의 근거 및 절차 규정을 신설하고, 원사업자의 성실한 납품단가 조정협의를 의무화하고자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입법 예고된 하도급법 개정안에는 구체적 납품가격은 당사자 간 협의에 의해 결정하도록 시장자율에 맡기지만, 협의 자체를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것은 시정명령 및 과징금 등의 제재를 통해 정부가 개입해 금지시키고 있다. (안 제16조의2 제1항 및 제16조의2 제2항 신설)

또, 원사업자의 정당한 이유 없는 협의 거부·해태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등의 제재를 부과했다. (안 제16조의2 제3항 신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원·수급사업자가 원재료가격 변동 등 계약 이후 발생한 시정을 감안해 상호협의에 의해 납품단가를 조정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전경련, 중소기업중앙회 등과의 간담회, 관계부처 협의, 당정협의 등 의견수렴을 거친 것으로, 국무회의 등을 거쳐 개정안이 확정되면 연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서울에서 '공정거래정책 올림픽' 개최

'제5회 서울경쟁포럼' 9월 3일 개최



경쟁정책, 즉 공정거래정책을 담당하는 각국의 당국자들과 학자·기업인이 대거 참가하는 '서울경쟁포럼'이 9월 3일 서울에서 개최됐다.

이번 대회에는 각국 경쟁거래위원장급 등 고위관계자들과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구학서 신세계 부회장, 이정대 현대자동차 부회장, 이중학 엘지전자 부회장 등 대기업 회장단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서울경쟁포럼은 경쟁정책에 관한 국제적 논의를 위해 공정위가 주최하는 세계 경쟁당국장 및 국내외 전문가들간 국제회의다.

올해 국내에서는 공정거래위원장, 대학 총장·교수, 경쟁법 전문가 등 약 200명이 참석했다.

앞서 소개한 기업인 외에도 이종희 대한항공 사장,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 이종희 대한항공 사장, 임종건 서울경제신문 사장, Poul O.G. Hoiness 덴마크 대사, 이경숙 숙명여대 총장, 이기수 고려대 총장, 홍복기 연세대 법대학장 등이 참석했다.

해외에서는 각국 경쟁당국 위원장, 실무전문가, 대학 교수, 경쟁법 전문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Scott Hammond(스코트 해먼드) DOJ 부차관보, Thomas Rosch(토마스 로쉬) 미국 FTC 상임위원, Walter Stoffel(월터 스토픸) 스위스 경쟁당국장, Pecina (페시나)체코 경쟁당국장, Syamsul Maarif(사무엘 마리프) 인도네시아 경쟁당국장, Andrew Gavil(가빌) 교수(미국) 등이 참석했다.

이번 포럼의 첫 번째 세션에서는 '효율적인 경쟁법 집행을 위한 공적 집행과 사적 집행의 최적 조화방안'이 논의됐고, 두 번째 세션에서는 경쟁법 집행에서 경제 분석의 역할과 방향을 논의했다.

그리고 세 번째 세션에서는 건강의료분야에서의 경쟁법 집행전략이 논의됐다.

서울경쟁포럼은 지금까지 주요 생점 분야에 대한 합리적인 경쟁법 집행 방향을 모색하는 장(場)이 되어 왔으며, 법집행 방향에 대한 다양한 견해, 합리적 방안 등의 논의를 통해 각국 경쟁당국 법집행의 국제적 정합성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그밖에 경쟁정책에 대한 국제적 이해를 높이고, 우리나라의 모범적인 경쟁법 집행을 홍보하는 장이 되고 있다.



▣ “소비자교육 콘텐츠를 만들어 주세요”

‘소비자교육 콘텐츠’ 공모··UCC 및 파워포인트 등 다양한 형태로 응모 가능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단체·지자체·학교·기업 등에서 행해지는 소비자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 및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 (사)한국소비자교육지원센터와 함께 ‘소비자교육 콘텐츠 공모전’을 실시한다.

이번 공모전은 ‘대학생 부문’과 ‘일반 부문’으로 나누어 실시되며, ‘대학생 부문’에는 대학생, ‘일반부문’에는 소비자단체 직원, 대학원생, 교사, 공무원, 기업체 직원 등 일반인이 참가할 수 있으며, 5명 이내로 팀을 구성하여 참가하는 것도 가능하다.

참가를 희망하는 사람들은 ▲ 합리적인 소비자 ▲ 바람직한 소비자운동 방향 ▲ 소비자와 생산자의 바람직한 관계 및 역할 ▲ 자속가능한 소비확산 등 4개 사항을 주제로 워드프로세서, 파워포인트 또는 UCC(User Created Contents) 등의 동영상으로 자료를 작성하면 된다. 자료접수 시기는 10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이며, 웹하드 www.webhard.co.kr / ID: kcagongmo / PW : 2008에 자료를 접수시키면 된다. 이번 공모전에서는 대상 수상자 1명(팀)에게 200만원, 금상 수상자 3명(팀)에게 각 100만 원 등 총 1,000만원의 상금이 지급된다.

이번 행사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 www.ftc.go.kr나 한국소비자원 www.kca.go.kr, 한국소비자교육지원센터 www.koince.org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수록되어 있으며,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공정위 소비자안전과(02-2023-4315), 한국소비자원(02-3460-3255), 한국소비자교육지원센터(02-887-3230)로 연락하면 된다.

▣ 중국의 반독점법 8월 시행.. “이렇게 대비하세요”

공정위, 기업들을 대상으로 “중국 경쟁법 최근 동향 설명회” 개최

공정거래위원회는 7월 18일 대한상의 의원회의실에서 한국공정경쟁연합회·대한상공회의소·중소기업중앙회와 공동으로 ‘중국 경쟁법 최근 동향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는 중국에 진출해 있는 2만여 우리 기업들이 중국 반독점법 시행(2008년 8월 1일)에 따라 직면할 수 있는 법률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마련한 것.

공정위는 카르텔, 시장지배적지위남용, 기업결합 등을 규율하는 반독점법의 주요 내용과 시행 규정, 중국 경쟁당국의 최근 동향, 기업들의 유의사항 등에 대해 상세한 정보를 제공했다.

이을려 반독점법 시행과 함께 집행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반부정당경쟁법’에 대한 설명도 제공했다. 이 법률은 독과점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적용되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법률적 리스크 감소에도 큰 도움이 됐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국의 법집행 관행 및 현지 실정에 대한 폭넓은 정보와 실무경험을 가지고 있는 국내 4개 로펌의 전문변호사들도 설명회에 참여해 기업들이 실제 필요로 하는 정보도 제공했다.

▣ 건설공제조합에 불공정약관 시정권고

하도급대금지급보증계약상 보증 책임의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한 조항은 무효

공정거래위원회는 7월 25일 건설공제조합이 원수급자와 체결하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계약상 보증 책임의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한 조항이 약관법에 위반된다고 판단, 사업자에게 이를 60일 이내에 수정·삭제하도록 시정권고했다. 공정위의 시정대상이 된 약관조항은 “건설공제조합은 계약자(원사업자)가 당좌거래정지 또는 파산으로 인하여 앞면 하도급대금지급채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경우 상대방(보증채권자, 수급사업자)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보증서 기재 사항과 약관에 따라 자급하여 드립니다”라는 보증사고의 범위를 제한하는 조항이다. 이와 함께 “조합은 건설산업기본법령상 하도급을 금지하는 공사를 하도급 받거나 무자격자가 하도급 받은 공사인 때에는 보증금을 지급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라는 보증금지급채무를 면책시키는 조항도 포함됐다.

공정위는 위 보증계약에서 보증사고를 당좌거래정지 또는 파산으로 제한하면, 그 밖의 사유로 원사업자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보증금을 받을 수 없게 되어 법의 취지에 반하고 있어 법률에서 보호하려는 보증채권자의 이익을 부당히 침해하는 것으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이라는 것. 또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금지하는 하도급이라 하더라도 하도급법에서 정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의 건설위탁에 해당하면 원사업자는 하도급법에 따라 하도급대금지급을 보증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이에 따른 보증계약을 체결해야 하기 때문에 각각의 약관조항은 무효라고 결정했다.

▣ ‘키코(KIKO)’ 심사청구 종결처리

‘키코’는 약관법 적용해 불공정한 것으로 판단하기 곤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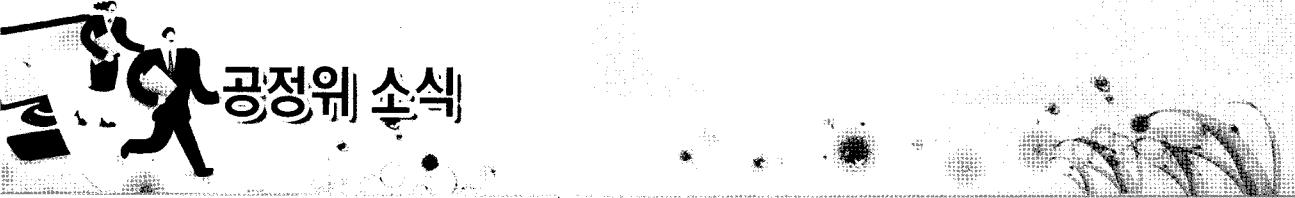
공정거래위원회는 7월 24일 약관심사자문위원회(전원위원회)를 거친 결과, 키코(KIKO) 통화옵션계약은 약관법을 적용하여 불공정한 것으로 판단하기 곤란하다고 함에 따라 종결 처리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6월, 신화플러스 등 8개 수출중소기업이 “한국외환은행 등 7개 은행의 ‘키코’(KIKO; knock-in, knock-out) 통화옵션계약은 불공정약관”이라고 약관심사청구서를 공정위에 제출함에 따라 심사를 개시했다.

심사청구인들은 “키코 통화옵션계약은 환율이 일정환율을 이하로 내려가면 계약이 무효로 되고, 일정환율을 이상으로 올라가면 계약금액의 2배 매도의무가 발생하는 매우 불공정한 거래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 것.

공정위는 심사결과에서, 조건에 따라 약관의 유·불리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약관법상 불공정성을 판단하기 곤란하다고 전제하고, 키코는 만기환율이 낙인(knock-in)환율과 낙아웃(knock-out)환율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고, 그 범위 밖에 있는 경우에는 고객에게 불리하게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은행들이 키코 통화옵션상품과 같이 고위험성 금융상품을 판매하면서 그 위험성을 고객에게 제대로 명시하고 설명했는지 여부는 법원에서 구체적 심사를 통해 판단할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공정위는 사건처리절차 규칙에 따라 이번 건에 대해 불공정혐의가 없어 종결처리한다고 밝혔다.



▣ 원사업자 10개 중 2개는 계약서 없이 하도급거래

2008년 하도급거래조사 결과·현금성결제 등 대금지급실태는 지속적으로 개선

공정거래위원회가 2008년도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금지급은 1999년 이래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지만 비대금분야 중 서면미교부행위는 조사대상 원사업자의 20%에 이르는 등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제조 4,000개, 용역 1,000개 등 5,000개 원사업자를 대상으로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올해 하반기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했었다.

서면계약은 하도급관계 유지 및 수급사업자의 권리 확보의 기본조건이어서 하반기에는 서면미교부행위 척결에 중점을 둔다는 것이 공정위 방침이다.

즉, 서면미교부행위에 대해 과징금 부과 등 제재 강화와 함께 '구두발주 추방캠페인'을 전개해 법준수의식이 확산되도록 한다는 것.

이번 조사 결과, 2008년에도 전년대비 하도급대금 지급조건 등이 개선되어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한업체비율이 8.9 → 4.6%로 감소하고 현금성결제수단으로 지급한업체는 88.5 → 95.3%로 증가했다.

특히,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한업체 중 만기일 60일을 초과하는 장기어음으로 지급한업체비율도 27.0 → 20.4%로 감소했다.

또, 법위반 혐의가 있는업체의 비중은 54.5 → 43.9%로 감소했고,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인 법정기일을 초과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한업체 비중도 8.2 → 7.3%로 감소했다.

그러나 위반행위 유형별 위반비율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비대금 관련 위반유형 중 서면미교부행위가 약 20%대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공정위는 제조·용역 분야 원사업자 조사과정에서 확보된 수급사업자 중 6만5,000개 중·소하도급업체를 대상으로 7월 14일부터 8월 중순까지 수급사업자 확인조사를 실시했다.

9~11월경에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최종 법위반 혐의업체에 대해서는 자진시정을 촉구하는 한편, 12월 중에는 법위반 불인정업체와 원사업자 조사표 미제출 5개 업체 및 "하도급거래가 없다"고 응답한 954개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 확인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도 밝혔다.

▣ 가맹정보 미등록 업체의 가맹점 모집에 현장조사 실시

정보공개 등록 1차 마무리·현장조사 통해 단속 및 계도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법 개정으로 '정보공개서 등록제'가 실시됨에 따라 8월 1일까지 1차로 정보공개서 등록을 마무리하고, 8월 하순부터 정보공개서 미등록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7월 25일 현재 총 570개 가맹본부의 724개 브랜드를 접수해 480여개 브랜드에 대하여 등록증을 발급할 예정이며, 나머지 브랜드는 현재 심사 중으로 8월 4일 이후 등록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접수율이 낮은 이유에 대해 폐점을, 가맹점 개설비용, 가맹점 매출액 및 임원의 법위반사실 등 회사의 주요정보를 공개하는 부담과 단기간 내 가맹점 모집 필요성이 없거나 제도의 도입사실을 알지 못하는 가맹본부도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편, 공정위는 미등록 가맹본부의 정보등록 유도와 가맹희망자의 피해예방을 위해 미등록 업체의 가맹점 모집에 대한 단속 및 계도활동을 8월 이후 현장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창업박람회 등 법위반행위가 나타날 수 있는 행사를 집중 점검하고, 가맹본부 및 가맹희망자를 대상으로 정보공개서 등록제를 소개하고, 정보공개서 미등록 업체의 가맹점 모집이나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고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철저하게 점검하고 적발 시 법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 <http://franchise.ftc.go.kr>'에서 등록된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를 8월 14일부터 공개해 가맹희망자가 필요한 창업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허위 정보공개서 신고 게시판'을 신설해 가맹본부의 허위·과장정보 제공행위를 제보 받아 신속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8월 4일 이후 정보공개서 미등록 가맹본부는 가맹점을 모집할 수 없기 때문에 미등록 가맹본부는 8월 4일 이후에도 정보공개서를 공정위에 등록할 수 있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등록 신청하는 것이 좋다.

등록과정 안내 및 등록에 필요한 자료는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 <http://franchise.ftc.go.kr>에서 검색이 가능하며, 등록 소요기간은 대체로 1개월 내외다.



■ SKT 및 하나로텔레콤의 이의신청 기각

로밍조치로 관련시장에서 품질·가격경쟁 촉진

공정거래위원회는 7월 23일 전원회의를 개최, 에스케이텔레콤(주) 및 하나로텔레콤(주)의 기업결합 관련 시정조치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원심결에서 이동전화서비스와 하나로의 유선통신서비스를 결합 판매하는 경우 ▲ 기존 서비스 폐지 등을 통해 당해 결합판매 강요 ▲ 유통업체에게 불리한 거래조건 등을 제시하여 결합상품판매 강요 ▲ 결합상품 판매를 위해 SK텔레콤의 이동전화서비스를 요청할 경우, 거절하거나 하나로텔레콤보다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적용하는 행위 등을 정보통신부 인가결정일로부터 5년간 금지한다는 시정조치를 내린 바 있다.

특히, SK텔레콤은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800MHz 주파수에 대한 공동 사용하는, 소위 '로밍'을 요청할 경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거절할 수 없도록 금지시켰다.

이번 이의신청에서 에스케이텔레콤과 하나로텔레콤은 로밍조치는 기업결합으로 발생하는 경쟁제한성에 비해 과도한 조치로,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이의신청 단계에서 원심결과 달리 판단할 만한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거나 사실관계 등에 특별한 변경이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 SK텔레콤의 이동통신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선호도, 800Mhz 독점에 따른 비용우위를 고려할 때 결합상품 판매를 통해 SK텔레콤의 지배력이 초고속인터넷시장으로 전이되고, 이로 인해 SK텔레콤의 이동통신시장에서의 지배력도 강화될 우려가 높다는 점 ▲ SK텔레콤과 하나로텔레콤의 경쟁제한성이 인정되는 기업결합을 허용하되, 경쟁제한 효과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되는 우량 주파수 독점 해소를 위하여 로밍조치를 부과한 것 ▲ SK텔레콤은 로밍 시 적정한 대가를 받을 수 있고, 기타 로밍 조건 등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사유 등으로 인해 과도한 조치가 아니라고 이를 기각했다.

한편, 공정위는 로밍 조치로 경쟁사업자도 우수한 800MHz를 사용할 수 있어 관련 시장에서 품질과 가격에 의한 경쟁이 촉진되고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에 따른 소비자 후생감소효과를 완화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 국책 산업은행이 부실계열사 부당지원

회사채 저리인수를 통해 계열회사 산은캐피탈 부당지원

공정거래위원회는 7월 16일, 한국산업은행이 계열회사인 산은캐피탈(주)이 발행한 대규모 사모사채를 정상금리보다 현저히 낮은 금리로 인수해 산은캐피탈(주)을 부당하게 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장명령과 함께 15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한국산업은행이 2004년 3월 30일부터 2005년 3월 18일까지 산은캐피탈이 발행한 2~3년 만기 사모사채 총 3,500억원을 7회에 걸쳐 4.79~5.86%의 낮은 금리로 인수했다는 것.

공정위는 산은캐피탈은 2003년 3월말 자기자본 1,102억원, 당기순손실 2,771억원으로 영업정지조치 등이 내려질 위기상태에 놓여 있던 산은캐피탈에 대해 산업은행이 인수금리 4.79~5.86%는 현저히 낮은 금리로 인수금액 3,500억원 역시 현저한 규모의 자금이고, 사채의 만기가 2~3년으로 지원효과가 장기간 지속되는가 하면 총 7회에 걸친 지속적인 지원은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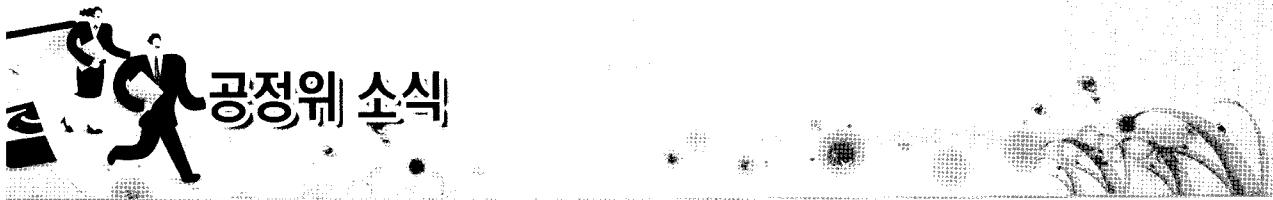
또, 지원성거래인 사모사채 인수규모 3,500억원은 산은캐피탈의 2004년 자본금 3,108억원보다도 큰 규모이며, 영업수익 2,269억원의 1.5배 이르는 규모로, 장기저리이면서 현저한 규모의 안정적 자금 조달이 가능하며 유력한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유지·강화하는 한편, 경쟁사업자에 비해 경쟁조건을 유리하게 만들어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결국, 공정위는 한국산업은행이 이러한 장기저리인 동시에 현저한 규모의 자금을 국가의 중요산업의 대출자금 용도가 아닌 퇴출위기의 계열회사에 대한 지원 자금으로 사용한 행위는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다.

공정위는 부당한 지원행위를 한 산업은행에 대해 법위반행위 금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154억3,5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의 이번 시정조치는 국책은행이 계열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침해한 행위에 대한 최초의 제재다.

공정위는 또, 부당지원을 통해 자본이 완전 잠식된 부실 계열회사의 퇴출을 저해하는 행위는 시장기능을 심각하게 왜곡하는 것으로 그 위법성이 중대하다면서 특히, 중요산업에 대한 시설자금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는 것이 주된 업무인 국책은행이 막대한 자금을 부실한 계열회사를 지원하는 데 사용하는 행위는 근절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5개 포털사업자 불공정 약관 개선

NHN, 다음 등 5개사의 25개 유형 약관 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7월 17일 NHN(네이버), 다음커뮤니케이션(다음), SK커뮤니케이션즈(네이트, 엠파스), KT하이텔(파란), 아후코리아(아후) 등 5개 대형포털사의 이용약관상 개정약관의 효력 발생 및 절차조항, 게시물의 저작권 이용조항 등 불공정한 조항들에 대해 포털사가 자진하여 개선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한편, NHN은 불공정약관조항 3개 조항을 제외한 대부분을 자진 시정했고, 다음커뮤니케이션은 사업지약관상 불공정약관조항을 이미 자진 사정하는 등 5개 포털시들은 불공정약관조항을 9월말까지 자진하여 시정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의견을 표명해왔다고 밝혔다.

최근 인터넷 포털사를 통한 거래가 급증하는 등 포털시장이 거대화되면서 콘텐츠제공업자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등이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서 공정위는 지난해 4월 포털업체 조사를 위한 T/F를 구성하고, 지난해 4~5월 기간 동안 5개 대형 인터넷 포털사들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조사한 결과, 다수의 불공정거래행위가 적발되어 이를 시정조치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약관상 불공정한 조항을 시정하기 위하여 지난해 8월부터 5개 대형 포털사의 약관 전반에 대한 심사에 착수해 직권인지조사를 실시하게 된 것.

공정위가 이번에 검토한 포털사의 약관은 이용자 약관 81개, 사업자약관 29개 등 총 110개 약관으로, 사업자 약관은 포털사가 콘텐츠제공자, 광고주, 쇼핑몰 판매자 등과 체결하는 약관으로 광고계약서, 웹카툰제공계약서, 디지털 아이템정보제공계약서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번 조사결과, 5개 포털사의 약관 중 25개 유형의 약관은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된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이에 대해 5개 포털사가 불공정약관조항을 자진 수정 또는 삭제하겠다는 의사를 문서로 표명하고 있어, 공정위는 9월말까지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 2008년 7월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소속회사 변동 현황

41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계열회사 수는 2008년 7월 1일 현재 1,005개에서 2008년 8월 1일 현재 1,014개로 전월 대비 9개(편입 14개, 제외 5개)가 증가했다.

14개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 수는 2008년 8월 1일 현재 584개로 2008년 7월 1일의 579개에서 5개 증가했으며,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을 제외한 27개 상호출자·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 수는 2008년 8월 1일 현재 430개로 2008년 7월 1일의 426개에서 4개가 증가했다.

증가내역은 회사설립 10개 [삼성 : 에스비리모티브(주), 현대자동차 : 메인트란스(주), 지에스 : 지에스자산운용(주), 한진 : 한진케리로지스틱스(주), 엘에스 : 엘에스전선(주), 엘에스엠트론(주), 대림 : 송도파워(주), 동양 : (주)누보쉐프, 대한전선 : 티아씨미디어(주), 현대백화점 : (주)현대애이앤아이], 지분취득 3개 [에스케이 : 울릉미네랄(주), 지에스 : (주)동보아이엔티, 두산 : 두산모트롤(주)], 기타 1개 [에스케이 : (주)울릉미네랄]로 총 14개다.

감소내역은 합병 2개 [한진 : 거양해운(주), 씨제이 : (주)에치티에치], 지분매각 1개 [케이티 : (주)블루코드], 기타 2개 [금호아시아나 : 태천개발(주), 포스코 : 푸른천안(주)]로 총 5개다.

■ 변동 내용

가. 편입 : 14개사 (회사설립 : 10, 지분취득 : 3, 기타 : 1)

나. 제외 : 5개사 (합병 : 2, 지분매각 : 1, 기타 : 2)

〈 2008년 7월 중 계열회사 수 변동 현황 〉

| 기 업 집 단 | 2008. 7. 1. | 편 입 | | | | 제 외 | | | | | | | 2008. 8. 1. | |
|--------------------------|----------------|----------|----------|----|----|-----|----------|----------|----------|----------|----|---|----------------|-------|
| | | 회사 설립 | 지분 취득 | 기타 | 계 | 합병 | 지분 매각 | 청산 종결 | 친족 분리 | 자정 제외 | 기타 | 계 | | |
|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 (14개) | 579 | 4 | 3 | 1 | 8 | 2 | - | - | - | - | 1 | 3 | 5 | 584 |
| 상호출자·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 (79개) | 1,005 | 10 | 3 | 1 | 14 | 2 | 1 | - | - | - | 2 | 5 | 9 | 1,014 |